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('19.11.18, 법인등기) 및 수도법 개정('19.11.29 시행)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일괄 수행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

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에 관한 업무
2.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
3.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
4. 법 제79조제1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생 략)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 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에 관한 업무 2. (생략) ⑤ ~ ⑦ (생 략) <신 설>	제6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 1. (삭제) 2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. 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에 관한 업무 2.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 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3.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 4. 법 제79조제1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물이용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1-7118